

보도시점

배포 시 부터

배포 2026. 1. 14.(수)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

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·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.

- ▶ 은행·금융지주회사, 금융투자회사·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·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·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‘시범운영’ 실시
- ▶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

’24.7.3일부터 시행된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지배구조법’)」에 따라 은행·금융지주회사(’25.1.2일까지), 대형 금융투자회사·보험회사(’25.7.2일까지)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* 여신전문금융회사·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·보험회사는 ’26.7.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.

* (여전)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

(저축)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

<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>

은행	금융지주회사	금융투자업자	보험회사	여신전문금융회사	상호저축은행
전체	전체	자산총액 5조원 ↑ / 운용재산 20조원 ↑ + 종합금융회사	자산총액 5조원 ↑	자산총액 5조원 ↑	자산총액 7천억 ↑
		자산총액 5조원 ↓ / 운용재산 20조원 ↓	자산총액 5조원 ↓	자산총액 5조원 ↓	자산총액 7천억 ↓

* □ 1단계(’25.1.2일까지) → □ 2단계(’25.7.2일까지) → □ 3단계(’26.7.2일까지) → □ 4단계(’27.7.2일까지)

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(이하 '임원등')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(이하 '내부통제등')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'내부통제등 관리의무'를 부담하며,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
이에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은행·금융지주회사, 대형 금융투자회사·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·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·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동을 실시합니다.

책무구조도의 시범운동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·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'26.4.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,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'26.7.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. ①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또한, ②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, ③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·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.

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('26.1.14. 금융위원회 의결)

- ▶ **(적용기간)** 시범운영기간(금융회사가 '26.1.14.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~ '26.7.2.까지)
- ▶ **(적용내용)**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('26.1.14. ~ 4.10.)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7조*, 제30조의2,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, 제35조,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

*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·공시·보고에 한정

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·저축은행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
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
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
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
 노력해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권유이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찬 (02-2100-2824)
	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	책임자	국 장	최정환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유상범 (02-3145-8310)

